

기업 지배구조 현황

대우건설

목차

전문

I. 주주

1. 주주의 권리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3. 주주의 책임

II.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3. 사외이사
4. 이사회 운영
5. 이사회 위원회
6. 이사의 의무
7. 이사의 책임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2. 외부감사인공시

IV. 이해관계자

1.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2.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V.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 기업 경영권 시장
2. 기관투자자

전문

대우건설은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 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나가며, 아울러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서 지속가능한 회사로서의 성장을 지향한다. 이에, 대우건설이 신뢰받는 회사로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현장을 제정한다.

I. 주주

1. 주주의 권리

- 1)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2)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3)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시,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 4)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1)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 2)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3)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주주의 책임

-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II.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 1)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선임

- 1) 이사회는 신중한 토의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한다.
- 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 3)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 4)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별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 5) 회사는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외이사

- 1)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야 한다.
- 2)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시 회상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된다.

- 4) 회사는 사회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 5)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해야 한다.
- 6)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4. 이사회 운영

- 1)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 2) 원만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마련한다.
- 3)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 4)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이사의 찬반여부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5. 이사회내 위원회

- 1)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각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2)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

해야 한다.

- 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7. 이사의 책임

- 1)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2)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3)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이사를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
- 2)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3)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4)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5) 회사는 감사위원회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2. 외부감사인

- 1)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은 외부 감사활동 중 확인한 주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3) 외부감사인은 감사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발생한 회사와의 금전거래내용을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IV. 이해관계자

1.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 1)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 3)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5) 채권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감자,분할등의 사항에 대해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6)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 1) 채권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2) 근로자의 경영참가 형태와 수준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3)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수 있어야 한다.

V.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 공시

- 1)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

하여야 한다.

- 2) 정기공시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 내용 외에 참석이사와 표결결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 3)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사항에 대한 예측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4)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5)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6)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2. 기업 경영권 시장

- 1)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의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2) 회사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 3)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